

수원지방법원 2020. 9. 17 선고 2019나5970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0. 9. 17 선고 2019나59707 판결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. 12. 19 선고 2018가단58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A

피고(선정당사자), 피항소인G

피고, 피항소인1. L

2. 대한민국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

담당변호사 양성우, 박시진

변론 종결 2020. 8. 13.

판결 선고 2020. 9. 17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. 12. 19. 선고 2018가단58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주위적으로, 피고(선정당사자), 나머지 선정자들, 피고 L,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평택시 M 대 1379m² 중 별지 도면 표시 16, 17, 6, 7, 18, 19, 12, 13,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ㄴ' 부분 661m²에 대한 별지 지분표 해당란 기재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예비적으로, 피고(선정당사자), 나머지 선정자들, 피고 L,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평택시 M 대 1379m² 중 별지 도면 표시 16, 17, 6, 7, 18, 19, 12, 13,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ㄴ' 부분 661m²에 대한 별지 지분표 해당란 기재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4. 6. 2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토지의 분할 관계

평택시 M 대 1067평은 1986. 10. 20. M 대 512평과 N 대 309평, O 대 246평으로 분할되었고, M 대 512평 토지는 같은 날 M 대 1379m²(417평, 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와 P대 95평으로 분할되었으며, N 대 309평은 같은 날 N 대 125평과 Q 대 184평으로 분할되었다(이하 분할된 토지 전부를 합하여 '이 사건 각 토지'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지번, 지목 및 면적으로만 특정한다).

나. 원고와 망 B, 망 K의 지분관계

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망 B, 망 K,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각각 200/1067, 427/1067, 150/1067, 290/1067의 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다. 망 B, 망 K의 상속관계

망 B은 1982. 9. 20.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 G, 선정자 C, D, F, H, I과 제1심 공동피고 E, J이

공동으로 상속하였고, 망 K은 1996. 5. 5. 사망하여 그 아들인 피고 L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, 11호증의 각 기재, 제1심법원의 R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 주장의 요지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의 '원고와 피고들 사이의'를 '원고와 망 B, 망 K,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'로, 제11행의 '피고들'을 '피고 대한민국과 망 B 및 망 K의 상속인인 피고 G 및 나머지 선정자들'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(제4면 제6행부터 제18행까지)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3. 판단

가.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

- 1)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,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·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,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(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4다71409 판결 등 참조).
- 2)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,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청구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718m²와 P 대 95평은 피고 대한민국이, N 대 309평은 망 B이, ○ 대 246평은 망 K이 구분소유하였다고 주장하나, 정작 피고 대한민국과 망 B, 망 K이 보유한 공유 지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구분소유 면적과 일치하지 않는 점, ② 망 K은 1986. 10. 16.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1954. 3. 31. 이 사건 토지 중 150/1067 지분을 매수한 S으로부터 위 지분을 그대로 양도받았고, 원고는 1981. 1. 20.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1954. 3. 31. 이 사건 토지 중 200/1067 지분을 매수한 T으로부터 위 지분을 그대로 양도받았는바,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 일이나 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납득할 만한 주장·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, ③ 피고 대한민국이 1948. 9. 11.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640/1067 지분을

취득한 이후 등기부가 표상하는 권리관계와 달리 원고나 망 K와 상호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망 B, 망 K 및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청구토지 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청구토지 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상호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.

나.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

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(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다38904 판결 등 참조), 원고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. 결국 자주 점유를 전제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하현국

판사양시호

판사안현진

별지